GTP공고 제2025-45호

「2025년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」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참여기업 모집 공고

경기도와 (재)경기테크노파크는 우수기술 이전을 기반으로 창업 및 사업화촉진을 위하여 기술이전 창업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전기술기반 창업에 관심 있는 (예비)창업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3월 12일

(재)경기테크노파크 원장

1. 사업개요

□ 사업목적

- O 공공 및 민간의 미활용 우수 기술을 창업자에게 이전하여 원천기술, 창업 아이템에 대한 기술창업 성공 유도
- O 기술이전을 기반으로 사업화 및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

□ 지원대상

- O 25년도에 기술이전 계약완료 또는 완료 예정인 경기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
- O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, 제3조 기준 사업 개시일로부터 7년 이내(공고일 기준)인 중소기업
- O 창업예정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(개인/법인)이 되어 있지 않아야 함
- O 창업기업의 경우 개인사업자(법인전환 포함)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서 '**사업개시일(개업일)**'을 기준으로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서 '**법인설립등기일**'을 기준으로 함
- O Spin-off 창업 예정인 중소기업 및 Start-up, 단 사업자등록은 경기도 내에 창업을 새로 하여야 함
- O 다수의 사업자등록증(개인, 법인)을 소지한 경우, 창업인정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 * [별점] 참조
- O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, 신청하는 대표자는 제시된 '신청자격'에 해당하고, 대표자 전원이 '제외대상'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

2. 지원내용 및 유의사항

□ 지원내용

- O 기술료, 시제품 등 이전기술기반 창업 필요요소 지원 (기업당 1,500만원 지원)
- 지원금은 다음 조건에 따라 기술료와 사업화 지원으로 기업이 자율구성
 - · 기술료는 계약금, 정액기술료 등 최초 지급하는 기술료에 한하며, 이미 지급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
- ㆍ지원금은 이행보증증권 발행 후 전액 선지급
- ㆍ세금, 인건비, 자산성 항목(양산목적금형, 장비 등) 등의 일부항목은 지원 제외

구분	지원프로그램	지원내용	지원규모
	기술료 지원 [기술이전 종류 별첨참조]	 이전 기술에 대한 기술료 지원(최대 500만원 지원) ※ 기술료 500만원 이하인 경우, 자부담 없음 ※ 기술료 500만원 초과인 경우, 초과 금액은 자부담 	
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	사업화 지원	- 시제품 및 금형 제작, 홍보 및 마케팅, 시험분석, 인증획득, 지식재산권 등에 소요되는 기술창업비용 지원 ※ 사업화 지원금은 총 지원금에서 기술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내 지원 ※ 사업화 지원에 소요되는 총금액에 대한 80% 이내 지원 총 사업화 비용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금 지원	1,500만원 이내 맞춤형 지원 (10개사 내외)
		100% 80% 이내 20% 이상	

※ 사업비 구성 예시(기술이전 기술료의 경우 평가 된 금액기준)

- 1. 기술이전 기술료 500만원 사용의 경우
- → 사업화 지원에 사용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,000만원. 이때 최소 자부담 금액은 **250만원 발생**
- 2. 기술이전 기술료 300만원 사용의 경우
- → 사업화 지원에 사용 할 수 있는 지원금은 최대 1,200만원. 이때 최소 자부담 금액은 300만원 발생

□ 유의사항

- O 예비창업자의 경우 사업종료 전 협약기간 내에 경기도에서 창업을 하여야 함
- O 기술이전은 계약서상의 이전계약일자가 25년도로 작성되어야 함
- O 사업 중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총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으며, 전액 기업 부담
- O 각종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향후 발견되는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
- O 신청·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규정 등에 위배되거나,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, 도용,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음

3. 신청요령 및 문의처

□ 제출기한: 2025. 3. 12. ~ 2025. 4. 8. (4주간)

□ 제출서류

항 목	비고
① 사업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	- 양식 별도 첨부(신청서 내 해당 붙임파일 포함)
② 기술이전 계약서 또는 기술이전 의향서 1부	- 사업신청 전에 기술계약이 체결된 경우 에는 기술이전 계약서 첨부, 체결 전인 경우 에는 기술이전 의향서 첨부
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	- 양식 별도 첨부(신청서 내 해당 붙임파일 포함)
④ 사실증명원 1부 (사업자등록사실여부)	- 예비창업자의 경우만 제출(기 창업기업 제출X) - 발급방법: 별첨3 참고
⑤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	- 기 창업기업의 경우 만 제출(예비창업자 제출X)
⑥ 중소기업 확인서	- <u>https://sminfo.mss.go.kr/</u> 에서 발급가능
⑦ 기타 증빙서류	- 여성기업 확인서, 경기도 유망중소기업, 일하기좋은기업 등 인증서 사본 제출: 가점부여

- *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및 **협약을 취소**할 수 있음
- ※ 제출서류는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한 서류로 제출

□ 신청방법

- O 공고방법: 경기스타트업플랫폼(https://www.gsp.or.kr) 및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(https://www.gtp.or.kr)
- O 접수기간: 2025. 3. 12. ~ 2025. 4. 8. 17:00 까지
- O 접수방법: 담당자 이메일 접수(dana7337@gtp.or.kr)
 - ※ 신청인(신청기업)은 본 공고, 신청서, 서식, 지침 등과 관련한 일체를 숙지하여야 하고, 신청서 제출 시 경기테크노파크는 신청인(신청기업)이 해당 모든 사항 일체를 숙지하였 다고 간주하며, 서류누락·오기 등의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인(신청기업)에게 있음

□ 문의처

담당자	주소	전화	이메일
김단아 주임연구원	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해안로 705, 경기테크노파크 4동 129호 기술사업화팀	031-500-3039	dana7337@gtp.or.kr

4. 선정평가 기준

□ 선정평가

O 평가내용: 이전기술 경쟁성 및 혁신성, 사업목적 및 목표의 부합성, 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, 제품/서비스 시장성 및 성과창출 등 종합평가

평가항목	평가내용
이전기술 경쟁성 및 혁신성	- 이전기술기반 사업화아이템의 독창성 및 혁신성 - 이전기술을 통한 성능 향상 및 원가절감 가능성 - 이전기술의 활용가능성 및 독점수준
사업목적 및 목표의 부합성	- 신청서의 내용이 동 사업 목적과 부합하는지 여부 -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현실성, 계량성, 구체성 등 - 이전기술의 연구개발 대체 가능수준
사업계획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	-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체계, 일정, 예산편성, 담당인력 등의 적정여부 - 기초자료조사, 기술이전 및 상용화 사전 준비성 등 - 이전기술적용 사업회아이템 개발 가능 능력
제품/서비스 시장성 및 성과창출	- 명확한 목표시장의 존재 및 적정성, 시장규모 - 목표시장에서의 성과창출 기대 정도 - 목표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 정도

- ※ 여성기업, 경기도유망중소기업, 일하기좋은기업 인증 증빙서류 제출시 발표평가에서 가점(각 2점) 부여
- O 평가방식: 1차 서류검토 및 서류평가(적합 신청기업이 2배수 초과시)

2차 발표평가(상황에 따라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평가)

- 서류검토: 사업 목적 및 자격 부합성, 허위사실 여부 등 서류검토
- 서류평가: 사업 관련 전문성을 가진 평가위원회 구성, 서류평가 진행(2배수 선정)
- 발표평가(대면 또는 온라인 평가): 기업당 최대 10분 발표 및 5분 질의응답
- ※ 제출된 서류 일체에 대해 평가하며, 발표평가 대상자에 한해서만 결과 및 향후 일정 개별 공지

5. 추진일정(안)

사업 공고	신청접수		1차 서류검토 및 서류평가
경기테크노파크	경기테크노파크, 신청기업		경기테크노파크
'25. 3~4월	'25. 3~4월		'25. 4월
과제 및 사업 수행	선정 및 협약체결		2차 선정평가
선정기업	경기테크노파크, 선정기업	7	경기테크노파크
'25. 5~11월	'25. 5월		'25. 4~5월
중간점검 및 최종점검	최종 결과평가		사후관리 및 연계지원
경기테크노파크	경기테크노파크		경기테크노파크
'25. 7~8월, 11~12월	'25. 12월		'25. 12월~

[별 첨]

O 창업인정기준

- 최초 회사설립일이 공고일 기준 7년을 초과한 다수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,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격 적합여부 결정

① '창업'으로 인정되는 경우

-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, 신청하는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- 기존 기업*(개인, 법인)과 이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 - * 폐업 기업 포함
- 기존 기업 (개인, 법인)을 폐업하지 않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- 개인 사업자가 기존의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
② '창업'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

- 아래의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, 최초 등록한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여부 검토
- 기존 기업*(개인, 법인)과 동일한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 - ※ 조직변경, 형태변경, 위장창업에 해당
 - * 폐업 기업 포함
- 기존 기업 (개인, 법인)을 폐업하고, 다른 장소에서 동종업종의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- ※ 법인전환, 사업승계에 해당
-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모두 폐업하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- ※ 사업이전에 해당
-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지 않고, 기존 사업자와 동종 또는 이종업종의 개인사업자로 신청하는 경우
 - ※ 사업확장, 업종추가에 해당

O 참여자격 제한사항

- 공고일 이후 협약 종료 전까지 기술이전이 되지 않는 경우
-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본인 명의의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(시효소멸자는 제외)
-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- 당해 연도에 정부 및 지자체, 공공기관 등의 **창업지원 사업에서 동일과제(기술)로 사업화자금*을 지원받은 경우** *시제품 제작, 재료비,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, 홍보물제작, 마케팅, 컨설팅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일체
- 신청기업 또는 기업의 대표가 정부사업 및 유관기관 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거나,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
- 본 과제(기술이전창업 이전기술기반 창업지원 과제)를 현재 수행중이거나 또는 받을 예정인 기업, 당해연도 포함 2년 이내 수혜기업은 제한한다.
- 휴업 중이거나 공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폐업을 한 경우
- 11개 법률*(2년이내) 법위반행위로 행정처분 받은 자(기업)의 경우 평가 총점의 20% 감점 적용
- 선정 후 과거 법위반 또는 신규 법위반 확인시 사업취소·보조금반환 및 3년간 도 지원사업 참여자격 제한
 - *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,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,「근로기준법」,「산업안 전보건법」,「폐기물관리법」,「대기환경보전법」,「소음진동관리법」,「물환경보전법」,「국세기본법」
- ※ 본 과제의 지원기업으로 선정되어 협약 시, 11개 법률 위반사항 증빙 관련한 요청자료 제출 필수. 관련 제출자료는 [별첨2] 참고

[별 첨2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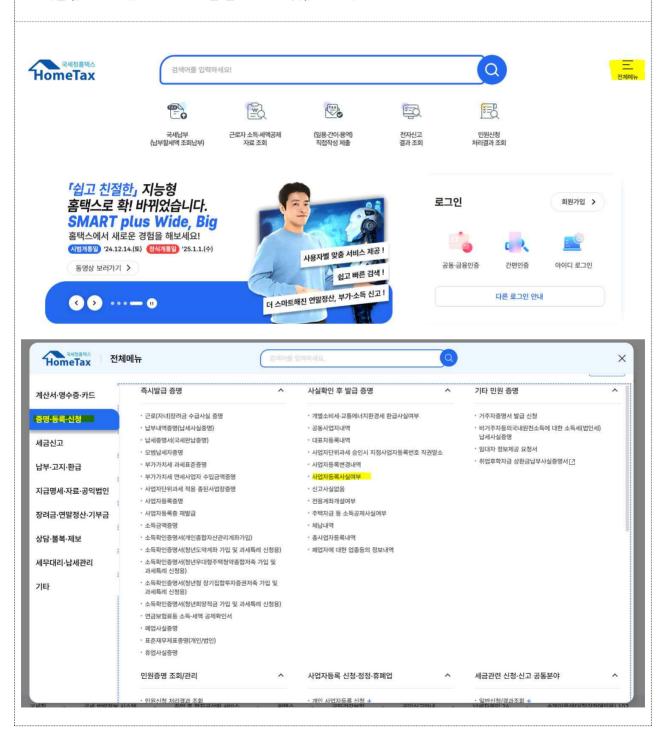
적용법률		법위반사실 여부 확인 및 조회	비고
I 공정	② 하도급법	(소관기관) 공정거래위원회 (서류제출) 홈페이지(https://case.ftc.go.kr) 에서 건별 <mark>법위반</mark> 사실 확인서 발급 (조 회)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사건심사·의결 조회 위반사실 여부 조회	
II 노동	④ 근로기준법 ⑤ 산업안전보건법	(소관기관) 고용노동부, 기업소재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청 (서류제출)기업소재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청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(조 회) 고용노동부, 고용노동 지방청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	선정기업 일괄조회 (신청자 미제출)
Ⅲ 환 경	⑦ 대기환경보전법⑧ 소음진동관리법	(소관기관) 환경부, 기업소재 관할 시군 (서류제출)환경부, 기업소재 관할 시군 행정처분 내역 및 법위반 사실 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 (조 회) 환경부,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	
IV 납세	⑩ 국세기본법 ⑪ 지방세기본법	(소관기관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(서류제출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신청 발급, <mark>국세·지방세 완납증명</mark> (조 회) 세무서, 기업소재 관할 시군 법위반사실 여부 조회	과제선정 후 협약시 제출

- * 위와 관련하여 신청기업이 별도로 제출해야 할 자료는 없으며, 동의서 기반으로 법위반사실 여부 일괄조회 (동의서는 1차 서류평가를 통해 선정된 2배수 대상으로 받을 예정)
- ※ 미리 신고하지 않은 법률위반 사실이 발견될 경우, 3년동안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

[별 첨3]

- O 사실증명원(사업자등록사실여부)발급: 국세청 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접속 후
 - → 우측 상단 '전체메뉴' 중 '증명·등록·신청' 카테고리에서 '사업자등록사실여부' 클릭
 - →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에 '위 납세자는 발급일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'를 선택하여 발급

(발급시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.)



O 기술이전: 개발의 결과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양도, 실시권 허락, 기술지도, 공동연구, 합작투자 또는 인수·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

O 기술형태: 지식재산권 및 know-how 등

O 기술이전 종류

기술이전 형태		내 용
기술매매 (양도양수)		매매형태로 이루어지는 기술이전으로서 기술도입자가 대가를 지불 하고 권리를 명의이전 받음으로써 계약완료
실시권 허여 (라이센스)	전 용 실시권	기술공급자와 기술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 도 기술을 업으로 사용할 수 없음
	통상 실시권	기술공급자와 도입자의 계약에 의하여 실시권의 범위 내에서 당해 특허기술을 비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서 특허권자는 제 3자에게 별도의 통상실시권 허여 가능
기술자문 및 지도와 연계		기술자 파견 등을 통해 기술자문 및 지도를 라이센스 거래와 연계
기술과 관련된 경영자원과 이전		기술을 거래함에 있어 그와 관련된 자본, 경영노하우, 설비, 핵심부품 등 관련된 경영자원을 함께 거래하는 방식
기술력 보유기업 또는 자산의 M&A 방식		기술을 보유한 기업 전체를 매수하는 방식 (M&A결과 자산을 매각하는 회사는 사라지게 됨)
기타		기술 자료의 매매에 의한 거래, 기술제휴에 의한 협력, 공동연구 등

※ 신청자 및 선정자는 동 공고문 및 전담기관(경기테크노파크)의 안내자료를 준수하여야 하며, 이를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동 사업을 신청한 (예비)창업기업에게 있음